

#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」 개정요약서

## 1. 행정규칙명

-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」

(관세청훈령 제2267호, 2023. 5. 23.)

## 2. 개정 사유

- 인천세관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

## 3. 주요 개정내용

-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(§3①)

- 관할지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, 평택직할세관인 경우 인천본부세관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

-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 건 처리기간 명확화(§6④)

-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된 건은 선별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하도록 하여 장기 미결 방지
- 세관장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간을 7일→15일로 확대하여 환급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

□ 기타 개정사항

○ 알기 쉬운 법률용어 반영

- 선(기)용품 → 선박(항공기)용품(§25③), 명기 → 작성(별지1)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규제대상 여부 : 해당 없음

6. 시행일자 : 2023. 5. 23.